

圖書館關係法 研究委員會(案)

도서관진흥법(안)	도서관관계법 연구위원회(안)
<p>第6條 (司書職員) ① 圖書館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圖書館 운영에 필요한 司書職員·司書敎師 또는 實技敎師(司書)를 두어야 하며, 社會敎育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社會敎育專門要員을 둘 수 있다.</p> <p>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司書職員은 1級正司書·2級 正司書 및 准司書로 구분하며 그 資格要件과 養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p> <p>③ 國家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司書職員의 研修 기타 司書職員의 資質向上을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p> <p>第10條 (圖書館振興基金) ① 政府는 圖書館의 設立, 施設 및 資料의 확충, 司書職員의 資質向上, 研究 기타 圖書館 발전에 필요한 資金에 充당하기 위하여 圖書館振興基金(이하 “基金”이라 한다)을 設置할 수 있다.</p> <p>② 基金은 다음 各號의 財源으로 造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政府出損金 2. 法人·團體 또는 개인으로부터의 寄附金 3. 基金의 운영에서 생기는 收益金 <p>第14條 (圖書館協會) ① 圖書館의 設立者는 圖書館 상호간의 資料交換 및 業務協助, 圖書館의 운영·管理에 관한 研究, 國際圖書館團體와의 相互協力 기타 圖書館職員의 資質向上 및 共同利益增進을 위하여 文化部長官의 認可를 얻어 圖書館協會(이하 “協會”라 한다)를 設立할 수 있다.</p> <p>② 協會는 法人으로 한다.</p> <p>③ 協會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된 것을 제외하고는 民法중 社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p> <p>④ 國家는 豫算의 범위안에서 協會의 운영에 필요한 經費를 補助할 수 있다.</p>	<p>第6條 (司書職員 등) ① 圖書館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圖書館運營에 필요한 司書職員 및 司書職 業務를 보조할 기타職員을 두어야 하며 일정 규모 以上の 公共圖書館은 社會敎育法이 定하는 바에 따라 社會敎育專門要員을 두어야 한다.</p> <p>①~③ 현행과 같음.</p> <p>第10條 (圖書館振興基金) ① 政府는 圖書館의 施設·자료확충·研究 및 圖書館發展에 소요되는 資金에 充당하기 위하여 圖書館振興基金(이하 “基金”이라 한다)을 設置하여야 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第14條 (圖書館協會) ①~③ 현행과 같음.</p> <p>④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豫算의 범위안에서 協會의 運營에 필요한 경비를 補助할 수 있다.</p>

도서관진흥법(안)은 문화부, 도서관관계법연구위원회 및 동위원회 소위원회에서 4회 검토되어 작성된 것이며, 도서관관계법연구위원회(안)은 한국도서관협회의 최종수정(안)으로 문화부에 제출된 것이다. 동위원회(안)은 중요한 부분만을 재검토하여 문화부에 강력히 요구한 조항으로, 발췌된 조항 이외의 것은 도서관진흥법 전문을 참고하기 바란다.

도서관진흥법(안)	도서관관계법 연구위원회(안)
<p>第16條(業務) ① 國立中央圖書館은 國家代表圖書館으로서 다음 各號의 業務를 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國外內資料의 蒐集·整理·보존·蓄積 및 公衆에의 이용 2. 國內資料의 納本管理 3. 다른 圖書館과의 資料의 流通 4. 各種 書誌의 작성 및 標準化와 國際標準資料番號制度의 운영 5. 電算化를 통한 國家文獻情報體制 및 圖書館協力網의 統轄 6. 外國圖書館과의 協力 및 資料의 國際交流 7. 다른 圖書館에 대한 業務·文化活動 및 平生教育의 指導·지원 8. 讀書의 生活化를 위한 施策의 수립 및 실시 9. 圖書館 운영에 관한 調査·研究 10. 圖書館 職員에 대한 研修 11. 기타 國家代表圖書館으로서의 機能 수행에 필요한 業務 <p>② 國立中央圖書館은 그 業務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國會圖書館과 協力하여야 한다.</p>	<p>第16條(業務) ① 현행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9. 현행과 같음 10. 각종 도서관 사서직원의 연수 11. 현행과 같음 <p>② 현행과 같음</p>
<p>第22條(公立公共圖書館의 운영) ① 地方自治團體가 設立·운영하는 公共圖書館(이하 “公立公共圖書館”이라 한다)의 運營費는 設立·운영하는 機關의 會計에서 이를 부담한다. 다만, 教育法 第52條의 規定에 의하여 教育長이 設立·運營하는 公立公共圖書館에 대하여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一般會計에서 그 運營費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p> <p>② 國家는 公立公共圖書館을 設立한 地方自治團體에 대하여 圖書館의 設立·資料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經費의 일부를 補助할 수 있다.</p>	<p>第22條(公立公共圖書館의 運營) ① 地方自治團體가 設立 운영하는 公共圖書館(이하 “公立公共圖書館”이라 한다)의 運營費는 地方自治團體의 一般會計에서 이를 부담한다.</p> <p>② 國家는 公共圖書館을 設置한 地方自治團體에 대하여 圖書館의 施設, 資料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經費의 일부를 補助하여야 한다.</p> <p>③ 제 2항에 의한 보조기준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p> <p>④ 文化部長官은 公立公共圖書館의 균형있는 도서관 발전과 도서관봉사를 위하여 지도, 지원을 한다.</p>
<p>第29條(使用料) 公共圖書館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利用者로부터 使用料를 받을 수 있다. 다만, 公立公共圖書館의 使用料에 관하여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p>	<p>第29條(使用料, 入館料) ① 國·公立公共圖書館은 그 이용자로부터 入館料를 받을 수 없다. 다만, 使用料에 관하여는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p>